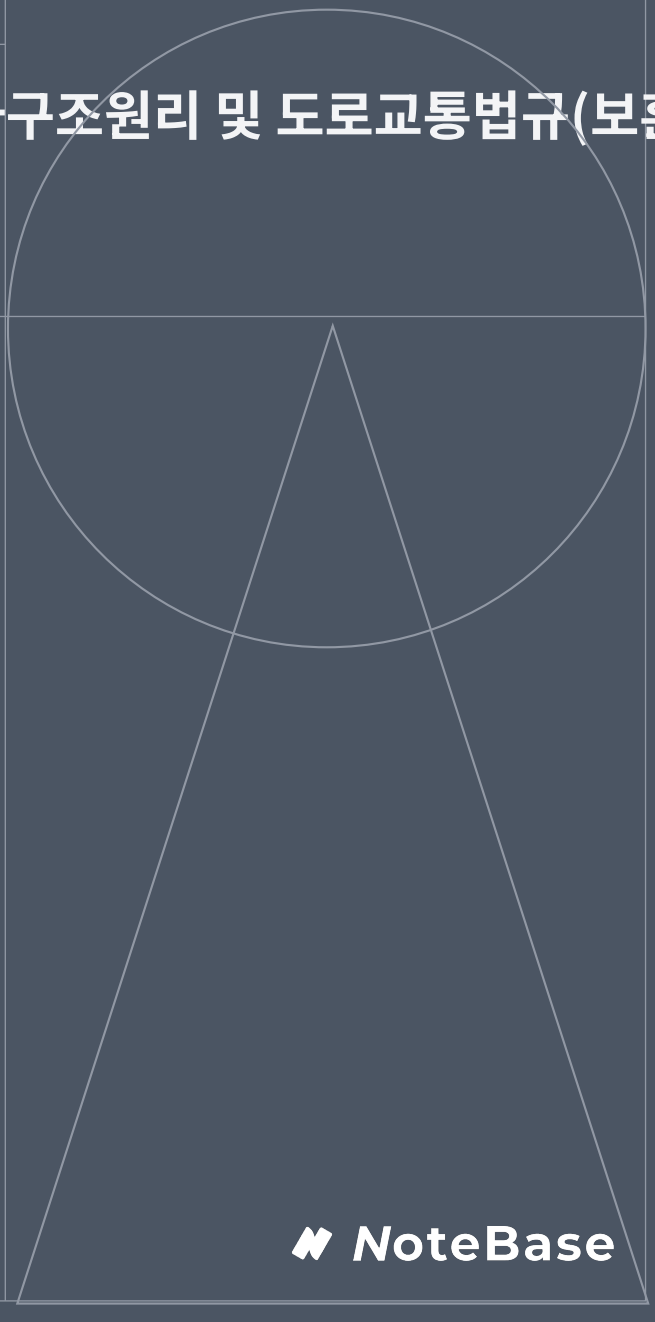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보훈청) ·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보훈청) · 2024 · 6월

공무원/서울시/9급 ·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보훈청) · 2024 · 6월

문 1. 전기플러그를 이용해서 외부로부터의 충전이 가능한 자동차는?

① 마이크로(micro) 하이브리드 자동차

② 마일드(mild) 하이브리드 자동차

③ 완전(full) 하이브리드 자동차

④ 플러그인(plug-in) 하이브리드 자동차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플러그를 연결해 **외부 전원으로 구동용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 '플러그인'은 이러한 외부 충전 기능을 뜻한다.

개념 구분

플러그인(plug-in)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과 전동기를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로, 충전구에 전기플러그를 연결해 외부 전원의 전기에너지를 구동용 배터리에 저장할 수 있다. 문제의 **'외부로부터의 충전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이 방식을 가리킨다.

마이크로·마일드·일반적인 완전 하이브리드는 외부 충전 기능을 갖추지 않은 방식이다. 특히 완전(full) 하이브리드는 저속 등 일정한 조건에서 전동기만으로 주행할 수 있지만, 배터리는 회생제동이나 엔진을 이용한 발전으로 충전한다. 회생제동은 감속할 때 차량의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회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동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지**와 **외부 전원으로 충전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문 2. 드럼 브레이크에 비해 디스크 브레이크가 가지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속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해도 제동력 변화가 적다.

② 디스크에 이물질이 쉽게 부착된다.

③ 마찰 면적이 커서 패드의 압착력이 작아도 된다.

④ 냉각 성능이 좋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디스크 브레이크는 드럼 브레이크보다 패드의 마찰 면적이 일반적으로 작고, 회전하는 드럼이 슈를 더 밀착시키는 **자기배력 작용이 없다**. 따라서 같은 제동력을 얻으려면 패드를 누르는 **압착력이 커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고속에서 반복 제동하면 운동에너지가 열로 바뀌어 브레이크 온도가 높아진다. 디스크 브레이크는 열을 잘 방출하므로 과열로 마찰력이 떨어지는 **페이드 현상이 드럼 브레이크보다 적다**. 따라서 반복 사용에 따른 제동력 변화가 비교적 작다.

② O: 디스크와 패드의 마찰 부분이 **외부에 노출된 구조**이므로 흙이나 모래 같은 이물질이 닿거나 부착되기 쉽다. 마찰 부분이 드럼 안쪽에 있는 드럼 브레이크보다 외부 오염에 노출되기 쉽다는 뜻이다.

③ X: 패드와 디스크가 실제로 접촉하는 마찰 면적은 드럼 브레이크의 라이닝 접촉 면적보다 일반적으로 작다. 또한 드럼 브레이크에서는 회전하는 드럼과 슈 사이의 마찰력이 슈를 드럼에 더 밀착시키는 자기배력 작용을 하지만, 일반적인 디스크 브레이크에는 이 작용이 없다. 따라서 같은 제동력을 얻으려면 **패드의 압착력이 커야 한다**. '마찰 면적이 커서 압착력이 작아도 된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④ O: 디스크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어 제동할 때 생긴 열을 주변 공기로 쉽게 내보낸다. 열이 내부에 머물기 쉬운 드럼 브레이크에 비해 **방열과 냉각이 잘된다**.

NoteBase

문 3. 2행정 사이클 엔진에 비해 4행정 사이클 엔진이 가지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압축비가 높다.

② 피스톤의 소손이 빠르다.

③ 체적효율이 높다.

④ 충격이나 소음이 크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4행정 기관은 같은 회전수에서 연소 횟수가 적고 별도의 흡입행정으로 냉각되므로, 2행정 기관보다 **피스톤의 열부하가 작아 소손이 덜하다**. '피스톤의 소손이 빠르다'는 2행정 기관의 특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일반적인 포트식 2행정 기관은 피스톤이 올라와 배기포트를 닫은 뒤부터 실질적인 압축이 시작된다. 4행정 기관은 흡기·배기밸브를 닫고 압축하므로, 이러한 2행정 기관과 비교하면 **유효 압축행정을 길게 확보**할 수 있어 압축비가 높은 편이다.

② X: 소손은 높은 열로 부품이 타거나 손상되는 현상이다. 같은 회전수에서 실린더당 연소 횟수는 2행정 기관이 크랭크축 1회전당 한 번, 4행정 기관이 2회전당 한 번이다. 4행정 기관은 연소 빈도가 낮고 별도의 흡입행정에서 냉각 효과를 얻으므로 **피스톤의 열부하와 소손이 상대적으로 작다**. '소손이 빠르다'는 '소손이 덜하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체적효율은 실린더의 행정체적에 비해 신선한 공기나 혼합기가 얼마나 충실하게 채워지는지를 나타낸다. 4행정 기관은 **흡입과 배기를 각각 별도의 행정으로 수행**하므로 가스 교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쉽다. 짧은 시간에 소기와 배기를 함께 하는 일반적인 2행정 기관보다 잔류 배기가스의 영향을 줄이고 신선한 가스를 충분히 채울 수 있어 체적효율이 높다.

④ O: 같은 회전수와 실린더 수를 기준으로 보면 4행정 기관은 실린더당 2회전에 한 번 동력을 발생시키므로, 1회전마다 동력을 발생시키는 2행정 기관보다 **회전력의 변동이 크다**. 또한 흡기·배기밸브를 작동시키는 기구가 있어 개폐에 따른 기계적 충격과 소음이 발생한다. 이 선지의 충격·소음은 이러한 회전 불균일과 밸브기구 작동에 따른 특성으로 이해한다.

NoteBase

문 4. 엔진 피스톤의 형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솔리드 피스톤은 스커트 부분에 홈이 없는 피스톤이다.

② 인바 스트럿 피스톤은 온도 변화에 따른 변형이 적은 피스톤이다.

③ 스플릿 피스톤은 측압을 받지 않는 스커트 부분을 떼어낸 피스톤이다.

④ 캠 연마 피스톤은 보스부의 직경은 작게, 스러스트부의 직경은 크게 제작된 피스톤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측압을 받지 않는 스커트 부분을 떼어낸 피스톤'은 **슬리퍼 피스톤**의 설명이다. 스플릿 피스톤은 스커트에 **분할 홈**을 내어 열팽창을 흡수하도록 만든 피스톤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솔리드 피스톤은 스커트에 **열팽창을 흡수하는 분할 홈이 없는** 통형 피스톤이다. 여기서 홈이 없다는 것은 피스톤 링을 끼우는 링 홈이 아니라 스커트의 분할 홈을 두지 않았다는 뜻이다.

② O: 인바 스트럿 피스톤은 열팽창률이 매우 작은 철·니켈 합금인 인바로 만든 지지대를 알루미늄 피스톤 내부에 넣은 구조이다. 이 지지대가 **스커트의 열팽창을 억제**하므로 온도 변화에 따른 치수 변화가 작다.

③ X: 스플릿 피스톤은 스커트에 분할 홈을 두어 온도가 올라갈 때 **홈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열팽창을 흡수**하도록 한 피스톤이다. 측압을 받지 않는 스커트 부분을 제거한 것은 슬리퍼 피스톤이며, 이 구조는 피스톤의 무게와 실린더 벽과의 접촉 면적을 줄인다.

④ O: 캠 연마 피스톤은 냉간 상태에서 단면을 타원형으로 가공하여 **피스톤 핀 축 방향인 보스부의 직경은 작게**, 그와 직각인 스러스트부의 직경은 크게 만든 피스톤이다. 보스부는 금속량이 많아 가열될 때 더 많이 팽창하므로, 미리 직경을 작게 만들어 두면 운전 온도에서 원형에 가까워진다.

NoteBase

문 5. 납산축전지 격리판의 구비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도성일 것

② 전해액의 확산이 잘될 것

③ 전해액에 산화 부식되지 않을 것

④ 극판에 나쁜 물질을 내뿜지 않을 것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격리판은 양극판과 음극판 사이의 단락을 막아야 하므로 **전도성이 아니라 전기적 절연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해액 속 이온은 이동할 수 있도록 미세한 구멍이 있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격리판은 양극판과 음극판을 분리하여 내부 단락을 막는 부품이다. 따라서 격리판 재료는 전자를 잘 통과시키는 전도성이 아니라 **전기적 절연성**을 갖추어야 한다. 전해액 속 이온이 구멍을 통해 이동하는 것과 격리판 재료가 전자를 전도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② O: 격리판은 **전해액이 잘 스며들고 확산될 수 있는 다공성 구조**여야 한다. 구멍 속 전해액을 통해 이온이 원활히 이동해야 양극판과 음극판에서 충전·방전 반응이 계속될 수 있다.

③ O: 납산축전지의 전해액은 묽은 황산이므로 격리판은 **산과 산화 작용에 견디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격리판이 부식되거나 손상되면 극판을 분리하는 기능이 약해져 내부 단락이 생길 수 있다.

④ O: 격리판은 **극판에 해로운 물질을 방출하지 않아야** 한다. 격리판에서 나온 불순물이 극판을 부식시키거나 전극 반응을 방해하면 축전지의 성능과 수명이 저하될 수 있다.

NoteBase

문 6. 디젤기관의 노크 방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착화성이 좋은 연료를 사용한다.

② 연소실 내 공기와류를 일으키게 한다.

③ 연료 분사 초기에 연료분사량을 많게 한다.

④ 압축비, 압축압력, 압축온도를 높인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분사 초기에 연료를 많이 공급하면 착화되기 전까지 쌓이는 연료가 많아져, 착화 순간 급격한 연소와 압력 상승이 일어난다. 노크를 줄이려면 **초기 연료분사량을 적게** 하여 한꺼번에 타는 연료량을 줄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디젤 노크는 연료 분사 후 실제로 불이 붙기까지의 착화지연 기간에 축적된 연료가 한꺼번에 연소하면서 압력이 급상승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착화지연을 짧게 하거나, 그동안 축적되는 연료량을 줄이는 것이 방지의 기본 원리이다.

① O: 착화성이 좋은 연료는 분사 후 쉽게 자기착화하므로 **착화지연이 짧다**. 그동안 축적되는 연료량이 줄어 급격한 연소를 억제한다. 디젤 연료의 착화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세탄가이다.

② O: 연소실 내 공기와류는 공기가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것으로, 분사된 연료의 증발과 **공기와의 혼합을 촉진**한다. 적절한 와류는 연료가 착화할 수 있는 상태를 빨리 형성하여 노크 방지에 도움이 된다.

③ X: 분사 초기에 연료분사량을 많게 하면 착화지연 기간에 축적되는 연료가 늘어나, 착화 후 한꺼번에 연소하는 양과 압력 상승률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분사 초기의 연료분사량을 적게 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압축비를 높이면 압축 말기의 공기 압력과 온도가 높아져 연료가 자기착화하기 쉬워진다. 이처럼 압축압력과 압축온도를 높이면 **착화지연을 단축**하여 착화 전 연료 축적을 줄일 수 있다.

NoteBase

문 7. 2WD(2 wheel drive)에 비해 4WD(4 wheel drive)가 가지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등판성능 및 견인력이 우수하다.

② 험한 도로나 미끄러운 도로면을 주행할 때 효과적이다.

③ 연비가 우수하다.

④ 조향성능과 안정성이 향상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4WD는 앞뒤 바퀴를 모두 구동하지만, 추가 구동장치로 **차량 중량과 동력 전달 손실이 증가**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2WD보다 일반적으로 연비가 불리하므로 '연비가 우수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선지별 해설

2WD는 두 바퀴에, 4WD는 앞뒤 네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구동 방식이다. 네 바퀴에 구동력을 나누는 것은 엔진 출력 자체가 커진다는 뜻은 아니다.

① O: 4WD는 네 바퀴를 구동하므로 두 바퀴만 구동하는 2WD보다 **여러 바퀴의 접지력을 구동에 활용**할 수 있다. 바퀴가 헛돌아 구동력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는 데 유리하므로, 경사로를 오르는 등판성능과 물체를 끄는 견인력이 우수하다.

② O: 험로나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마찰이 부족하거나 바퀴별 접지 상태가 달라지기 쉽다. 4WD는 **앞뒤 바퀴에 구동력을 나누어 전달**하므로, 접지력이 부족한 일부 구동륜에만 의존하는 것을 줄여 이러한 도로를 주행하는 데 유리하다.

③ X: 4WD는 앞뒤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추가 장치가 필요하므로 차량 중량이 늘고, 구동계의 마찰 등에 따른 동력 손실도 커진다. 따라서 같은 차종에서 엔진과 주행 조건 등이 같다면 일반적으로 **2WD보다 연비가 불리하다**. '연비가 우수하다'는 '연비가 불리하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노면 조건에 맞게 앞뒤 바퀴에 구동력을 배분하면 특정 차축에 구동력이 집중되어 바퀴가 과도하게 미끄러지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조향 시 방향 유지와 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노면 상태와 구동 방식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의 이점이며, 모든 조건에서 미끄러짐을 없앤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8. 자동차의 주행저항 중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차량의 주행 중 타이어의 접지면에서 발생하는 변형과 복원, 타이어와 도로면 사이의 마찰 손실에 의하여 발생하며, 바퀴에 걸리는 하중에 비례하는 주행저항이다.

① 가속저항
② 등판저항
③ 공기저항
④ 구름저항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타이어가 노면에 닿으며 변형되었다가 복원되는 과정과 접촉부의 마찰에서 생기는 저항은 **구름저항**이다.
구름저항계수가 같으면 바퀴에 걸리는 하중에 비례한다.

핵심 풀이

구름저항은 바퀴가 굴러갈 때 타이어와 노면의 접촉부에서 발생하는 주행저항이다. 타이어는 접지할 때 눌려 변형되고 접지부를 벗어나면 복원되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의 일부가 열로 소모된다. <보기>의 **'접지면에서 발생하는 변형과 복원'**과 '마찰 손실'은 이 구름저항의 발생 원인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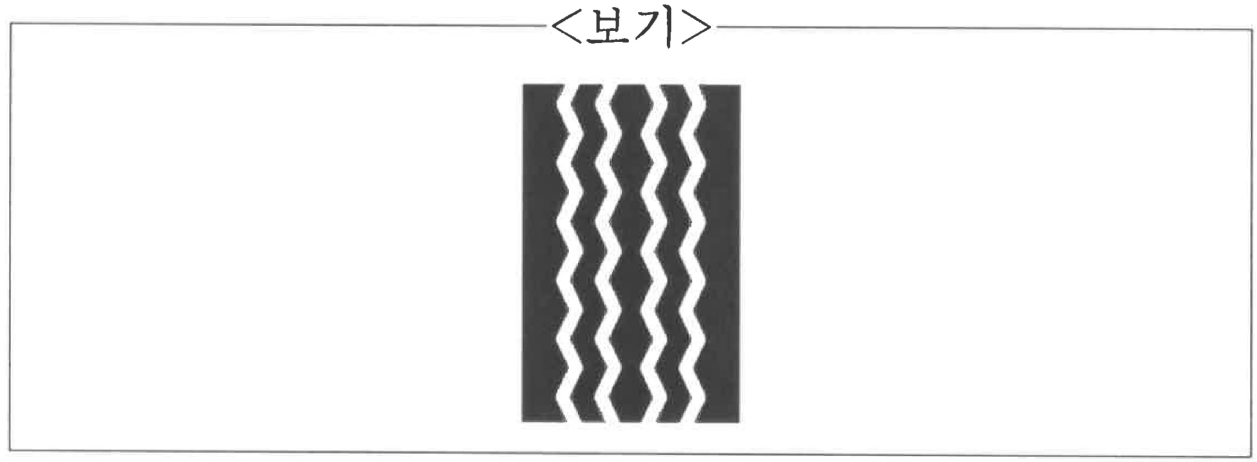
구름저항의 크기는 구름저항계수와 바퀴에 걸리는 하중을 곱하여 나타낸다. 따라서 **구름저항계수가 일정하면 하중에 비례**한다. <보기>의 하중에 관한 설명도 이에 해당한다.

다른 주행저항과는 발생 원인으로 구분한다. 가속저항은 속도를 높일 때 관성 때문에, 등판저항은 오르막길에서 중력 때문에 생긴다. 공기저항은 주행 중 공기와의 상대운동 때문에 생긴다. 이들과 달리 구름저항은 **타이어가 노면을 구르는 과정의 에너지 손실**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9. <보기>의 타이어 패턴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① 러그패턴

② 블록패턴

③ 리브패턴

④ 리브-러그 패턴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그림의 홈은 지그재그로 꺾이면서도 **타이어 둘레 방향으로 연속**해서 이어진다. 이처럼 길게 이어지는 홈과 띠 모양의 접지부가 나타나는 것이 리브패턴이다.

핵심 풀이

그림에서 세로로 길게 이어진 흰색 홈은 타이어 둘레 방향의 홈을 나타낸다. 홈 사이의 검은 접지부도 끊어지지 않는 띠를 이루므로 **리브패턴**에 해당한다. 리브패턴의 홈은 직선뿐 아니라 그림처럼 지그재그 형태일 수도 있다.

구분 기준은 홈이 꺾였는지가 아니라 **홈의 주된 방향과 접지부의 연결 형태**이다. 러그패턴은 폭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홈이 주를 이루고, 블록패턴은 홈에 의해 접지부가 독립된 블록으로 나뉜다. 리브-러그 패턴은 둘레 방향의 리브와 폭 방향의 러그를 결합한 형태이다. 그림에는 폭 방향으로 접지부를 나누는 홈 없이 연속된 세로 띠가 나타난다.

NoteBase

문 10. 자동차 윤활유의 구비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응고점이 높을 것

② 카본 생성이 적을 것

③ 인화점과 발화점이 높을 것

④ 열과 산에 대해 안정성이 있을 것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윤활유는 추운 환경에서도 굳지 않고 마찰 부위로 공급되어야 하므로 **응고점이 낮아야 한다**. 응고점이 높으면 낮은 온도에서 유동성을 잃어 윤활이 어려워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응고점은 윤활유가 냉각되어 굳는 온도이므로 **응고점이 낮을 것**이 올바른 조건이다. 낮은 온도에서도 윤활유가 흐를 수 있어야 시동 시 마찰 부위에 공급되어 마모를 줄일 수 있다.

② O: 카본은 탄소질 침전물로, 엔진 내부에 쌓이면 오일 통로를 막거나 피스톤 링의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윤활유는 **카본 생성이 적어야** 한다.

③ O: 인화점과 발화점은 윤활유가 불붙는 성질과 관련된 온도이다. 두 온도가 높아야 **고온에서도 쉽게 불붙지 않아** 윤활 작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④ O: 윤활유는 엔진의 열과 연소 과정에서 생기는 산성 물질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열과 산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야 쉽게 변질되지 않고, 금속 부품의 부식과 윤활 성능 저하를 줄일 수 있다.

NoteBase

문 1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30센티미터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에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한다.

③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다.

④ 경사진 곳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않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으면 별도의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정답 1번

①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선지의 30센티미터는 법정 기준과 다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여객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정류소에 정차한 경우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NoteBase

③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20, 2020.12.31>
1.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가.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다.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

④

경사진 곳에서 주차하더라도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않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임목 설치 등 별도의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다만,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9.28>
1.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한다)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NoteBase

문 1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어린이교육시설에 고용된 운전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일 것

②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③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④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정답 1번

①

등록명의 요건은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이다. 해당 시설에 고용된 운전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 2024.12.31, 2025.4.8>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
가.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②

어린이통학버스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 2024.12.31, 2025.4.8>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NoteBase

③

어린이보호표지는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 표지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 2024.12.31, 2025.4.8>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④

교통사고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선지의 보험 가입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 2024.12.31, 2025.4.8>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NoteBase

문 13. 도로교통법령상 자동차의 속도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①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일반도로에서 자동차의 최고속도는 시속 90킬로미터까지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적인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시속 6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시속 40킬로미터이다.

③ 자동차의 통행 속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나,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지정하여 추가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고,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없는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정답 4번

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시속 50킬로미터, 소통을 위해 지정한 구간에서는 시속 60킬로미터 이내이다. 그 밖의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60킬로미터 이내이며, **편도 2차로 이상이어도 시속 80킬로미터 이내**이므로 시속 90킬로미터까지 지정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9, 2019.3.28, 2019.4.17, 2020.12.10, 2020.12.31>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시 · 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나. 가목 외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②

자동차전용도로의 일반적인 제한속도는 **최고 시속 90킬로미터, 최저 시속 30킬로미터**이다. 선지는 최고속도와 최저속도를 모두 잘못 제시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9, 2019.3.28, 2019.4.17, 2020.12.10, 2020.12.31>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NoteBase

③

자동차의 도로 통행 속도를 정하는 것은 **행정안전부령**이다. 선지는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잘못 제시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2020.6.9>

④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비로 노면이 젖으면 최고속도에서 20%를 감속**해야 한다. 다만, 폭우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이면 50%를 감속**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②비 · 안개 · 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 · 도경찰청장이 별표 6 1. 제1호 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9, 2020.12.31, 2021.12.31>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 · 폭설 ·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NoteBase

문 14.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보기>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제83조(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 「도로교통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출석지시서를 받은 사람은 출석지시서를 받은 날부터 _____(가)_____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야 한다.

① 10
② 15
③ 20
④ 30

정답 1번

공통 해설

출석지시서를 받은 사람은 **출석지시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3조(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
①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출석지시서를 받은 사람은 출석지시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15.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자동차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30퍼센트
② 40퍼센트
③ 60퍼센트
④ 70퍼센트

정답 2번

공통 해설

자동차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 **40퍼센트**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6.20>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NoteBase

문 16.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보기>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가)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① 1
② 3
③ 5
④ 7

정답 2번

공통 해설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④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NoteBase

문 1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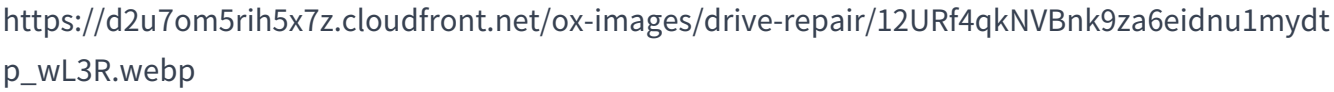
① 원동기장치자전거
② 승용자동차
③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④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정답 4번

①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포함**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종 보통면허란 제7호
비고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원 또는 중량 기준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 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별표 9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2URf4qkNVBnk9za6eidnu1mydtp_wL3R.webp

NoteBase

②

승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의 운전 가능 차종에 모두 포함**된다. 승용자동차의 운전 자격을 제2종 보통면허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종 보통면허란 제1호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TvQZExUmtNGjZfA81PhODjua5T0nFskb.webp

③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 상한은 15명**이다. 15명은 포함되며,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는 이 면허의 허용범위를 벗어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종 보통면허란 제2호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TvQZExUmtNGjZfA81PhODjua5T0nFskb.webp

NoteBase

④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이다.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종 보통면허란 제4호
비고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원 또는 중량 기준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 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별표 9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l8WoipzZM1ioEdEJzZszXG31-EkT7Ta7.webp

NoteBase

문 18. 「도로교통법」 제28조의2에서 <보기>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_____(가)_____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① 10
② 20
③ 25
④ 30

정답 2번

공통 해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
시 · 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NoteBase

문 1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의표지'는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

② '규제표지'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

③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

④ '지시표지'는 주의표지 또는 규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

정답 4번

①

주의표지는 **도로상태의 위험이나 도로 또는 그 부근의 위험물을 알려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지**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6.14>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

규제표지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한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6.14>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③

노면표시는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알리는 표지**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6.14>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 규제 ·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NoteBase

④

지시표지는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필요한 지시에 도로사용자가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이다.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는 것은 **보조표지**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6.14>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 ·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NoteBase

문 2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에서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과목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약물과 안전운전

②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

③ 주요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사례

④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실태

정답 3번

①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에는 **약물과 안전운전**이 교육과목으로 포함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4호 교육과목 및 내용 (2)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제46조제1항 · 제46조의2제1항 · 제46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4제1항 관련)

4.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5_7fY67nFHdoxE9iX8fktZ_GALQR98-L.webp

비고
1. 교육대상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 바목에 따른 의원 · 병원 · 종합병원에서 교육실시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선별검사 또는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그 결과에 따라 위 표 (3)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에 포함된 치매선별을 위한 자가진단을 대체할 수 있다.
2. 교육대상자가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7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위 표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교육대상자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모의 또는 실차 주행 운전능력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위 표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교육과목 ·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NoteBase

②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에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이 포함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4호 교육과목 및 내용 (3)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제46조제1항 · 제46조의2제1항 · 제46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4제1항 관련)

4.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1CGk0AZVjsLsKEduWmSHTz4tyS_5Abx8.webp

비고
1. 교육대상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 바목에 따른 의원 · 병원 · 종합병원에서 교육실시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선별검사 또는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그 결과에 따라 위 표 (3)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에 포함된 치매선별을 위한 자가진단을 대체할 수 있다.
2. 교육대상자가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7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위 표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교육대상자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모의 또는 실차 주행 운전능력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위 표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교육과목 ·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NoteBase

③

주요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사례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 과목**이다.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4호 교육과목 및 내용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제46조제1항 · 제46조의2제1항 · 제46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4제1항 관련)

4.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TTyiOxP0zNRhielr67HcP8cCpimNGSrA.webp

비고
1. 교육대상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 바목에 따른 의원 · 병원 · 종합병원에서 교육실시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선별검사 또는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그 결과에 따라 위 표 (3)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에 포함된 치매선별을 위한 자가진단을 대체할 수 있다.
2. 교육대상자가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7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위 표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교육대상자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모의 또는 실차 주행 운전능력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위 표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교육과목 ·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3호 교육과목 및 내용 (2)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제46조제1항 · 제46조의2제1항 · 제46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4제1항 관련)

3.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8OwNlwGYI9VvJveRs8Iek2FbJF0yUw3i.webp

(비고)
1. 교육과목 ·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2. 위 표의 교육시간에서 괄호 안의 것은 신규 교통안전교육의 경우에 적용한다.

NoteBase

④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에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실태**가 교육내용으로 포함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4호 교육과목 및 내용 (5)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제46조제1항 · 제46조의2제1항 · 제46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4제1항 관련)

4.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v-dP1LOmsbSwt5NDRHjEy_NZWc2E6m1M.webp

비고
1. 교육대상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 바목에 따른 의원 · 병원 · 종합병원에서 교육실시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선별검사 또는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그 결과에 따라 위 표 (3)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에 포함된 치매선별을 위한 자가진단을 대체할 수 있다.
2. 교육대상자가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7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위 표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교육대상자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모의 또는 실차 주행 운전능력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위 표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교육과목 ·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NoteBase